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입신고 면제조항에 삭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국에서 이미 선적이 완료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●환경부고시제2020-151호

전국 생태·자연도(生態·自然圖) 일부 수정·보완

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·보완된 생태·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7월 3일

환경부장관

- 1. 대상지역 :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등 4개소
- 2. 근거법령 :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
- 3. 생태·자연도 수정·보완 내용

| 대상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| 도 역          | 생태·자연도 등급 |           | 비 고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당초 고시     | 수정·보완     |                  |
|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산128-18번지 일원 | 모 곡 (377071) | 1등급       | 1, 2, 3등급 | 식생, 동물           |
|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남로 70-57 일원     | 연 천 (387133) | 1등급       | 2, 3등급    | 식생, 지침 12조 3항 다목 |
|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824-2 일대    | 쌍 책 (358063) | 1등급       | 3등급       | 지형               |
|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 549-3 일대    | 탄 천 (367093) | 2등급       | 2, 3등급    | 식생               |

- 4. 생태·자연도 수정·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(환경공간정보서비스, <http://egis.me.go.kr>)에 게재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등(준비서 포함)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.

●국토교통부고시제2020-482호

인천~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(줄음쉼터 설치)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-857호(2011.12.30.), 2012-291호(2012.06.11.), 국토교통부고시 2013-954호(2014. 01.03.), 2014-485호(2014.08.13.), 2016-73호(2016.02.26.), 2016-316호(2016.05.31.), 2017-502호(2017.08. 03.), 2019-202호(2019.05.03.), 2019-663호(2019.11.27.), 2020-393호(2020.05.28.)로 고시된 인천~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줄음쉼터 설치공사를 위하여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15조, 「도로법」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(변경), 「도로법」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,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(변경)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(변경)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